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51
------	-----

2009. 02. 11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1월 30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9년 2월 13일) 상정, 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경영기획실장 권영규)

- 위원회 정비 및 관리개선 계획에 따라 해당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령)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추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서울특별시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두고,
- 운영실적이 미미하고, 역할이 종료된 환경농업육성시민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폐지하며, 그 성격에 따라 비상설적으로 운영되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상해정보상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려는 것임.

나.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추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서울특별시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

-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에 따라 디지털 행정의 추진, 성과평가, 위원장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2007년 설치 이후 개최실적이 1회에 불과하여 그 운영실적이 미비하며, 「서울특별시 정보화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과 활용능력강화를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위원회”도 지난 3년간 단 1회에 그칠 정도로 그 역할이 제한적임.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정보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존의 “서울특별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추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정보화격차해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은 그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정보화 역량을 하나로 집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다. “환경농업육성시민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폐지(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 환경농업육성시민위원회 폐지(안 제6조)
  - 안 제6조 “환경농업육성시민위원회”는 1995년부터 시작된 서울특별시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사업이 지난 2005년에 모두 종료하였으며,
  - 이에 따라 최근 위원회 구성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진락한 상황이며,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유기농산물전문판매장 임차료가 모두 회수되는 대로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를 폐지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폐지(안 제11조)
  - 재래시장 정비 및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주체간 분쟁의

조정을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 특히,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정자문위원회(안 제12조)

- 동 위원회는 지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로,
- 현행 법령상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에 개정됨에 따라 이 개정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문위원회 설치, 주민공람 등 법령의 규정과 충돌하는 일부 조례의 관련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6개 위원회의 비상실화(안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 가운데 일부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주요사항 등을 비정기적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필요가 있어 비(非)상설 형태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안 제4조)

- 동 심의회는 직무로 인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 지난 2007년에 1회 개최되었으나 그 소관 업무의 속성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비상실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등 사실상 비상실 형태로 운영해 왔음.

○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안 제5조)

- 동 위원회는 서울시의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 위원회가 비상실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설립목적인 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에 관한 주요한 사항 등의 논의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 비상실화 방안은 적절한 조치임.

○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안 제7조)

- 동 위원회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 관련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연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 다만, 위원회 직무 가운데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상품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심의가 필요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원회를 폐지하기 보다는 비상실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도 적합한 조치임.

○ 서울특별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안 제8조)

- 안 제8조의 “서울특별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의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대 60년으로 제한된 설치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60년 제한기간이 도래한 보존묘지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위원회 상설화의 실익이 없고, 향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위원회 구성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비상실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임.

- 서울특별시축제심의위원회(안 제9조)
  - 안 제9조의 “서울특별시축제심의위원회”는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것으로,
  - 축제의 무분별한 설치나 폐지, 민간축제에 대한 지원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안은 바람직한 조치임.
- 서울특별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안 제10조)
  - 안 제10조의 “서울특별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임.
  - 문화지구 관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자문 및 심의를 하는 위원회의 성격상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설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필요시마다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마. 위원회 정비조례 제정을 통한 위원회 일괄 정비의 적절성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촉진조례」를 비롯한 12개의 개별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운영실적이 전혀 없거나 그 활동이 미비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의도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일일이 개별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금번과 같이 통합하여 한 위원회에서 정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나,
- 다만, 각 조례를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협의 절차를 생략한 점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입법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서울특별시시장분쟁위원회가 지난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것은 재래시장 정비 사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짐.
- 답변 : 분쟁 당사자의 중재 요청이 발생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중재 요청이 지난 3년간 전혀 없었던 결과임.
- 질의 :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가능하지만 분쟁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비상설형태라도 조례에 설치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함.
- 답변 : 상위법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의 폐지로 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설화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는 않음.

5. 토론요지

-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